국경을 넘는 판결의 집행

Dr Alexander Ressos, TEP
Attorney-at-Law (Switzerland and Germany),
Solicitor (England & Wales and Hong Kong)
Of Counsel, KGP Legal LLC
alexander.ressos@kgplegal.com.sg
www.ressos.com.sg

집행 가능성이 법정지 선택을 좌우하는 이유

판결의 가치는 그 판결로 집행할 수 있는 자산의 가치만큼입니다. 뉴욕협약(New York Convention)에 따라 중재판정은 172개국에서 집행될 수 있습니다.[1] 이러한 집행 범위는 국제 당사자들이 전통적으로 소송보다 중재를 선호해 온 주된 이유입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SICC)의 성공은 채무자가 자산을 보유한 곳에서 그 판결을 집행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이 목표를 네 갈래로 추구합니다. 다자 협약, 상호 등록을 위한 법률, 법원 간 양자 양해, 그리고 각 집행국의 일반 규칙입니다.

헤이그 관할합의협약

가장 중요한 수단은 2005년 6월 30일의 헤이그 관할합의협약(Hague Convention on Choice of Court Agreements)입니다. 싱가포르는 2015년 3월 25일 이 협약에 서명하고 2016년 6월 2일 비준했으며, 2016년 10월 1일부터 구속을 받고 있습니다. 의회는 2016년 4월 관할합의법(Choice of Court Agreements Act)을 통과시켰으며, 이로써 싱가포르는 전용 입법으로 협약을 이행한 최초의 국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가가 되었습니다.[2] 당사자들이 SICC를 포함한 싱가포르 법원을 위한 전속적 관할합의를 체결한 경우, 다른 체약국의 법원은 제9조의 제한적 거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에 따른 판결을 승인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이 협약은 유럽연합과 그 회원국, 영국, 멕시코, 몬테네그로, 우크라이나, 2025년 7월 1일부터의 바레인, 2025년 1월 1일부터의 스위스를 포함한 39개 체약 당사자를 구속합니다. 중국과 미국은 서명했으나 비준하지 않았습니다.[3] 실무적으로 그 결과는, 전속적 관할조항에 근거한 SICC 판결을 조약 체제에 따라 런던, 프랑크푸르트, 파리, 취리히, 제네바에서 집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범위를 제공할 수 있는 아시아 법원은 많지 않습니다.

싱가포르는 2019년 7월 2일의 후속 헤이그 재판협약(Hague Judgments Convention)에는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이 협약은 2023년 9월 1일 발효되었으며 전속적 관할합의가 없는 판결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당사자에는 유럽연합, 우크라이나, 우루과이, 그리고 2025년 7월 1일부터 영국이 포함됩니다.[4] 싱가포르가 가입할지 여부는 향후 10년의 열린 질문 중 하나입니다.

REFJA에 따른 법정 등록

싱가포르에서 외국판결 등록에 관한 핵심 법률은 외국판결 상호집행법(Reciprocal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Act, REFJA)이며, 이 법은 상호주의에 기초하므로 해외에서의 싱가포르 판결에도 중요합니다. 이 법은 지정국의 판결을 새로운 소송 없이 싱가포르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개정 이후 이 법은 재판상 화해, 동의판결, 금전 및 비금전 판결, 중간명령을 포괄합니다.[5] 비금전 판결로의 확장은 2019년 개정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전의 영연방 판결 상호집행법(Reciprocal Enforcement of Commonwealth Judgments Act)은 이후 폐지되었고, 해당 영연방 법역은 REFJA 체제로 이전되었습니다.[6] 상호주의는 양방향으로 중요합니다. 자국 판결이 싱가포르에 등록되는 국가는 싱가포르 판결에도 같은 대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지침각서

조약이나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대법원은 외국 법원들과 지침각서(memoranda of guidance)를 체결해 왔습니다. 이 문서들은 구속력이 없습니다. 각 법원이 상대 법원의 금전판결 집행에 관한 자국 법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밝혀, 채권자가 무엇을 예상할 수 있는지 알게 해 줍니다. 법원 목록에서 날짜가 가장 이른 각서는 2015년 두바이 국제금융센터(DIFC) 법원과 체결한 것이며, 이어서 2017년 카타르 국제법원(Qatar International Court), 2017년 9월 6일 버뮤다 대법원과 체결했습니다.[7] 가장 중요한 것은 2018년 8월 31일 서명된 중국 최고인민법원과의 각서였습니다. 이 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각서는 중국 법원이 상사 사건에서 싱가포르 금전판결을 승인하고 집행할 조건에 관한 권위 있는 설명을 채권자에게 제공했습니다.[8]

이후 미얀마, 르완다, 바레인 및 아부다비 글로벌마켓(Abu Dhabi Global Market) 법원과의 각서가 뒤따랐습니다. 싱가포르는 또한 호주 빅토리아주 대법원 상사부(Commercial Court of the Supreme Court of Victoria)와 서한을 교환했습니다. 2026년 9월 16일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Conference of Chief Justices of Asia and the Pacific)에서 메논 대법원장과 한국의 조희대 대법원장은 금전판결에 관한 지침각서와 외국법 정보 교환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9] 이 네트워크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걸프 지역의 금융센터, 아시아의 주요 교역 상대국, 그리고 싱가포르 투자자들이 활동하는 국가들과 집행 연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보통법과 대륙법의 경로

이러한 수단 중 어느 것도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싱가포르 판결은 집행국의 일반법에 따라 집행될 수 있습니다. 보통법 법역에서는 채권자가 일반적으로 판결채무에 근거하여 소송을 제기하며, 그 소송에서 외국 법원이 본안을 다시 심리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륙법 법역에서는 대개 싱가포르 법원에 관할이 있었고,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적법절차에 따라 얻어졌고, 집행이 공서에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반하지 않으며,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 법전이 집행을 허용합니다.[10] 싱가포르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방식으로 중국, 일본, 베트남에서 집행되었습니다. 중국 난징의 법원은 이미 2016년에 상호주의를 근거로 싱가포르 고등법원 판결을 승인했습니다.[11]

금융센터에는 반대 방향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싱가포르 법원은 외국 법원에 국제적 의미의 관할이 있었고 판결이 본안에 관하여 확정적이고 종국적인 경우 보통법에 따라 외국 금전판결을 승인합니다. 따라서 싱가포르의 은행이나 패밀리오피스에 자산을 가진 채무자에 대한 판결을 보유한 채권자는 사기, 공서, 자연적 정의 위반이라는 통상의 항변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그 자산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외국판결로부터 자산을 보호하는 금융센터는 금세 명성을 잃을 것입니다. 형사몰수와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관련 문제는 제H편 제V장에서 살펴봅니다.

주

1. UNCITRAL, 뉴욕협약 현황표 (uncitral.un.org,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당사국 172개국, 가장 최근은 동티모르(2023년 1월 17일 가입). ↩
2. Ministry of Law, 보도자료 “Singapore ratifies Hague Convention on Choice of Court Agreements”, 2016년 6월 2일 (mlaw.gov.sg): 2015년 3월 25일 서명; 2016년 6월 2일 비준; 2016년 10월 1일 싱가포르에 대해 발효; 2016년 4월 Choice of Court Agreements Act 통과; 전용 입법으로 협약을 이행한 최초의 국가; SICC 판결은 다른 체약국이 승인하고 집행. ↩
3. HCCH, “Status table: Convention of 30 June 2005 on Choice of Court Agreements”, hcch.net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체약 당사자 39개; 싱가포르는 2015년 3월 25일 서명, 2016년 6월 2일 비준, 2016년 10월 1일 발효; 유럽연합 승인은 2015년 10월 1일 발효; 영국은 2015년 10월 1일 발효(2020년 9월 28일 가입); 멕시코; 몬테네그로(2018년 8월 1일); 우크라이나(2023년 8월 1일); 바레인(2025년 7월 1일); 그 밖에 알바니아, 몰도바 공화국, 북마케도니아 및 모나코; 스위스(2024년 9월 18일 가입, 2025년 1월 1일 발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효); 중국(2017년 9월 12일)과 미국(2009년 1월 19일)은 서명했으나 비준하지 않음. 제9조의 거부 사유에 관하여: Singapore Courts, “Enforcement of SICC Judgments”, judiciary.gov.sg (최종 갱신일 2025년 1월 13일). ↩

4. HCCH, “Status table: Convention of 2 July 2019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in Civil or Commercial Matters”, hcch.net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2023년 9월 1일 일반 발효; EU 회원국과 우크라이나는 2023년 9월 1일부터, 우루과이는 2024년 10월 1일부터, 영국은 2025년 7월 1일부터, 알바니아와 몬테네그로는 2026년 3월 1일부터, 안도라는 2026년 6월 1일부터; 싱가포르는 서명국 또는 당사국으로 등재되지 않음. ↩

5. Singapore Courts, “Enforcement of SICC Judgments”, judiciary.gov.sg (최종 갱신일 2025년 1월 13일): Reciprocal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Act는 이 법이 적용되는 국가의 재판상 화해, 동의판결, 금전 및 비금전 판결, 중간명령을 포함한 판결의 상호 승인 및 집행을 규정. ↩

6. Reciprocal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Amendment) Act 2019 및 2023년 3월 1일부로 Reciprocal Enforcement of Commonwealth Judgments Act의 폐지에 관하여는 법무부 보도자료 및 Singapore Statutes Online 참조. ↩

7. Singapore Courts, “Enforcement of Money Judgments”, judiciary.gov.sg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바레인 최고사법위원회, 르완다 대법원, 미얀마 연방 대법원,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 버뮤다 대법원, 카타르 국제법원 및 분쟁해결센터, ADGM 법원 및 DIFC 법원과의 지침각서, 그리고 빅토리아주 대법원 상사부와의 서한 교환; 연도는 문서 파일명에 표시된 바에 따름(DIFC 2015년, 카타르 2017년, 버뮤다 2017년 9월 6일, 바레인 2023년 5월 8일). ↩

8. Memorandum of Guidance between the Supreme People’s Cour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Supreme Court of Singapore o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Money Judgments in Commercial Cases, 2018년 8월 31일 Zhou Qiang과 Sundaresh Menon이 서명 (judiciary.gov.sg):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제1조(제6–16조는 중국에서의 싱가포르 판결, 제17–30조는 싱가포르에서의 중국 판결에 관한 것; 상사 사건의 금전판결); 제2조("This memorandum has no binding legal effect"). ↩

9. Singapore Courts, 보도자료 "Supreme Courts of Singapore and Korea sign new arrangements to support cross-border civil and commercial disputes", 2026년 9월 16일 (judiciary.gov.sg): 금전판결 집행에 관한 지침각서 및 외국법 정보에 관한 협력 양해각서,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기간 중 서울에서 순다레시 메논 대법원장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명. ↩

10. Singapore Courts, "Enforcement of SICC Judgments", judiciary.gov.sg (최종 갱신일 2025년 1월 13일): 보통법 법역에서는 SICC 판결을 증거로 하여 판결채무에 근거한 소송을 제기하며 본안의 재심리는 일반적으로 가능성이 낮음; 대륙법 법역에서는 판결 법원의 관할, 확정성, 적법절차, 공서 및 상호보증이 전형적인 요건; 대법원 판결이 중국, 일본 및 베트남에서 집행됨. ↩

11. *Kolmar Group AG v Jiangsu Textile Industry (Group) Import & Export Co Ltd* (2016) 사건에서 난징시 중급인민법원의 싱가포르 고등법원 판결 승인. ↩

Disclaimer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It i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sources as at its date of publication. These sources have not been independently verified against licences, regulatory registers or the records of the entities concerned. It is not legal, tax, financial or investment advice. Nor is it a recommendation to invest in, transact with or use the services of any entity mentioned. Law and regulation change frequently, so the content may be incomplete or outdated.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Dr Alexander Ressos and the publisher of SingaporeIQ exclude all liability for loss or damage arising from the use of or reliance on this article. Readers should obtain advice on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acting or refraining from action.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Names and trademarks of the entities discussed belong to their owners and are used for identification only. Their mention implies no endorsement, affiliation or allegation of wrongdoing.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Corrections and updates: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This article may be quoted with attribution to SingaporeIQ (SingaporeIQ.com). Reproduction in full and any commercial use require prior written consent. The Legal Terms at https://singaporeiq.com/legal-terms apply.

Author contact: Dr Alexander Ressos, TEP ·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